

총동아리연합회 자치공간 대관에 관한 세칙

제정 2024.05.14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(이하 ‘총동아리연합회’ 라 한다) 소관 자치공간을 대관·유지·관리하는데 있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간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및 공간 사용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·위치)

총동아리연합회 대관 가능 자치공간(이하 ‘자치공간’ 이라 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푸른샘 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3층 313호)
2. 공연연습실 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지하 1층 B11-5호)
3. 분과위원회 사무실 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지하 1층 B11-8호)
4. 다목적실 B (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Y-Plaza 지하 1층 B326호)
5. 다목적실 C (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Y-Plaza 지하 1층 B313호)
6. 다목적실 D (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Y-Plaza 지하 1층 B314호)
7. 다목적실 E (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Y-Plaza 지하 1층 B315호)

제2장 운영·관리

제1절 통칙

제3조(운영·관리)

운영·관리는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가 한다.

제4조(역할 및 권한)

본 세칙 제3조에 따른 운영·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자치공간 대관 운영 규정
2. 자치공간 대관 절차

- 3. 자치공간 개방 요일 및 시간
- 4. 자치공간 운영에 관한 기타 방침

제2절 운영 규정

제5조(운영 규정의 목적)

자치공간 대관 운영 규정은 동아리의 활동 지원과 공정한 대관 문화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6조(운영 규정)

- ① 자치공간 대관 운영 규정(이하 ‘운영 규정’이라 한다)은 본 세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집행위원회에서 심의·조정한다.
- ② 자치공간 대관 운영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 - 1. 자치공간 개방 요일, 시간, 대관 신청 기한
 - 2. 자치공간 대관 절차 및 대관 방법
 - 3. 자치공간 운영에 관한 기타 방침
- ③ 운영 규정은 운영·관리주체가 정하고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.
- ④ 본 조 3항의 운영 규정을 정했던 당시의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 제59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, 새로이 선출된 총동아리연합회장단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은 운영·관리주체가 조속히 새로운 운영 규정을 정하고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할 수 있도록 지휘·감독해야 한다.
- ⑤ 운영·관리주체는 인준받은 자치공간 대관 운영 규정을 총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 및 기타 온·오프라인 플랫폼으로 공고해야 한다.

제3절 대관 운영 시간

제7조(개방)

- ① 자치공간 개방 요일, 시간, 대관 신청 기한은 본 세칙 제4조에 따라 운영·관리주체가 정한다.
- ② 운영·관리주체는 개방 요일 및 시간 내에서 대관 편의에 따라 대관 시간 단위를 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.
- ③ 운영·관리주체는 개방 요일, 시간, 대관 신청 기한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공고한다.

제4절 대관 절차 및 방법

제8조(대관 절차)

- ① 운영·관리주체는 대관 절차를 투명·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.
- ② 대관 절차는 신청, 신청 접수, 신청 심사 및 심사 결과 통보를 순서로 한다.

제9조(대관 자격)

자치공간은 다음 각 호의 단체가 대관 받을 수 있다.

1. 연세대학교 소속 중앙동아리, 국제캠퍼스 동아리, 단과대학 동아리, 일반동아리
2.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칙과 총동아리연합회칙에서 규정한 집행기구•의결기구•자치기구•특별기구•특별자치단체
3. 기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인정한 단체

제10조(대관 신청)

- ① 본 세칙 제9조의 단체가 자치공간을 대관 받기 위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운영•관리주체에게 대관을 신청해야 한다.
- ② 대관 신청은 본 세칙 제9조의 단체의 대표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해당 단체가 별도로 정한 경우 대표자가 아닌 단체 구성원이 할 수 있다.

제11조(대관 신청 접수)

운영•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선착순 신청에 따라 대관 신청을 받는다.

제12조(대관 신청 심사)

운영•관리주체는 본 세칙 제9조의 대관 자격 및 본 세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한 자치공간 대관 운영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반려를 심사한다.

제13조(대관 심사 결과 통보)

- ① 운영•관리주체는 대관이 승인되면 신청단체의 대관 시작일 전 일 19시까지 대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신청단체에 통보한다.
- ② 운영•관리주체는 대관이 반려되면 신청단체의 대관 희망 시작 시각 24시간 전까지 신청 단체에 통보한다.

제14조(대관 방법)

- ① 자치공간 대관 방법은 일반 대관, 정기 대관, 장기 대관, 사전 대관으로 한다.
- ② 운영•관리주체는 각 대관 방법을 운영 규정에 명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5조(일반 대관)

- ① 일반 대관은 운영•관리주체가 자치공간을 일회적으로 대관 받고자 하는 본 세칙 제9조의 단체에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일반 대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본 세칙 제9조의 단체는 대관 희망일 기준 7일 전 09시부터 대관 희망일 2일 전 18시까지 대관을 신청해야 한다.
- ③ 일반 대관의 세부적인 방식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6조(정기 대관)

- ① 정기 대관은 운영•관리주체가 자치공간을 주기적으로 대관 받고자 하는 본 세칙 제9조의 단체에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.

- ② 정기 대관은 매 분기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 주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③ 정기 대관의 세부적인 방식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
- ④ 운영•관리주체는 정기 대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의 활동 계획 및 내용을 심의하여 정기 대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- ⑤ 예정된 정기 대관일 8일 전 취소하지 않고 정기 대관 받은 자치공간을 미사용한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,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잔여 정기 대관을 모두 취소한다.

제17조(장기 대관)

- ① 장기 대관은 운영•관리주체가 자치공간을 하루 이상 대관 받고자 하는 본 세칙 제9조의 단체에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장기 대관의 신청 기한은 운영•관리주체가 정한다.
- ③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장기 대관 신청단체의 활동 계획 및 내용을 심의하여 장기 대관 여부를 의결한다.

제18조(사전 대관)

- ① 사전 대관은 본 세칙 제15조 제1항의 일반 대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본 세칙 제9조의 단체가 중요 행사 또는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보다 일찍 대관을 신청해야 할 경우, 운영•관리주체가 예외적으로 사전에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사전 대관의 신청 기한은 운영•관리주체가 정한다.
- ③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사전 대관의 신청단체의 사전 대관 필요성, 활동 계획 및 내용을 심의한다.
- ④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사전 대관의 승인 또는 반려를 직권으로 결정한다.

제19조(추가 대관)

- ① 추가 대관은 본 세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관이 승인된 단체가 추가로 대관을 희망하는 경우, 운영•관리주체가 해당 단체에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대관일 기준 2일 전 18시부터 1일 전 18시까지 대관 희망 자치공간에 대해 타 단체에 의한 본 세칙 제10조에 따른 대관 신청이 없으면, 운영•관리주체는 선착순에 따라 추가 대관을 진행할 수 있다.
- ③ 추가 대관의 세부적인 방식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

제5절 대관 공간 관리

제20조(사용단체의 의무)

- ① 본 세칙 제14조 제1항 및 제19조 1항에 따라 자치공간을 사용하는 본 세칙 제9조의 단체(이하 ‘자치공간 사용단체’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.
 1. 운영•관리주체가 정한 절차와 운영 규정에 따른 대관 신청과 이용
 2. 공간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행위의 금지
 3. 사용 중 인적•물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안전관리

4. 공간 내 시설물 훼손 및 분실 유의
 5. 공간 사용 후 정리 정돈과 청결 유지
 6. 입·퇴실 시 전등 및 냉/난방 기기 전원 확인
- ② 자치단체 사용단체는 별도로 운영·관리주체가 정한 각 공간의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
제21조(의무 위반단체에 대한 조치)

- ① 자치공간 사용단체가 본 세칙 제2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,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.
 1. 일반 대관의 경우: 대관 마감일 다음 일 포함 2주간 대관 자격 제한
 2. 정기 대관의 경우
 - 가. 대관 마감일 다음 일 포함 2주간 대관 자격 제한
 - 나. 잔여 정기 대관이 있으면 일괄 취소
 3. 장기 대관의 경우
 - 가. 대관 마감일 다음 일 포함 2주간 대관 자격 제한
 - 나. 잔여 장기 대관이 있으면 일괄 취소 및 즉시 퇴거
 4. 사전 대관 및 추가 대관의 경우: 본 조 제1항 제1호와 같다.
- ② 자치공간 사용단체가 3번 이상 본 세칙 제2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,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대관 마감일 다음 일 포함 3개월간 대관 자격을 제한한다.

제22조(공간의 반납)

- ① 자치공간 사용단체는 대관 시간의 종료, 사용 목적의 중단, 사용 자격의 상실 등 공간 사용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.
- ② 공간 반납 시에는 자치공간 사용단체가 공간을 배정받은 이후로 변경시킨 일체의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공간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치공간 사용단체는 본 세칙 제2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.